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7. 30 - 8. 4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함.

【 15 】 199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審查報告書

1993년 8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7월 24일 양주군수 제출

나. 회부일자 : 1993년 7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0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3. 7. 29 - 8. 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예산안 조정 심사보고, 토론,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양주군 부군수 윤명노)

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 및 규모

- 금번 추경예산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공무원의 인건비가 동결되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한 삭감등 예산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
- 재정기반이 취약하여 자체수입으로는 주민이 요구하는 투자사업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데는 도나 중앙의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등 지원금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임.
- 당초예산 성립이후 보조사업 계획이 수정, 변경, 추가 되었고 통합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기구 및 인력의 조정

-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조치등, 요인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규모가 48,773백만원으로 7,888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9개 회계가 9,254백만원으로 823백만원이 증액되어 금해 추경 총재원은 8,711백만원이며,
-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재원을 보면 국고 및 도비보조금 3,400만원, 지방교부세 500백만원, 지방세 463백만원, 세외수입 3,525백만원이며,
- 다음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9개 회계에 사업수입 △ 131백만원, 사업외수입 762백만원, 보조금 192백만원으로 823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광.백석상수도 급수공사비 △ 123백만원, 군비전입금 338백만원등 100백만원을 재원으로 회천상수도 지선확장 공사비 및 광.백석상수도 배수로 설치 사업비등을 계상 하였음.

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1) 추경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비 고
합 계	58,027	49,316	8,711	17.7	
일반회계	48,773	40,885	7,888	19.3	
특별회계	9,254	8,431	823	9.8	

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구 分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 고
합 계	48,773	40,885	7,888	
지 방 세	12,518	12,055	463	
세외 수입	9,590	6,065	3,525	
지방교부세	8,594	8,094	500	
보 조 금	14,630	11,230	3,400	
지 방 채	3,441	3,441	-	

②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구 分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 고
합 계	9,254	8,431	823	
지 방 세	-	-	-	
세외 수입	5,994	5,363	631	
지방교부세	-	-	-	
지방양여금	920	920	-	
보 조 금	2,340	2,148	192	
지 방 채	-	-	-	

다. 세출 예산의 총괄

①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 고
합 계	48,773	40,885	7,888	
의회비	305	335	△ 29	
일반행정비	9,092	8,399	693	
사회복지비	5,679	4,928	750	
산업경제비	8,035	5,706	2,328	
지역개발비	22,727	19,179	3,548	
문화및체육비	1,819	543	1,276	
민방위비	499	766	△ 267	
지원및기타 경비	613	1,025	△ 412	

② 특별회계 세출예산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 고
합 계	813,580	873,730	△ 65	
상수도사업	2,400	2,300	100	
주택사업	451	463	△ 12	
도시교통사업	609	415	194	
의료보호기금	440	253	187	
새마을특별 지원	156	150	6	

새마을소득 금 고	149	116	33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220	219	1	
공유 임야	1,200	1,199	1	
경영수익사업	694	485	209	
지방양여금	2,917	2,813	104	

3) 주요 사업 내역

- . 공공도서관 건립비 1,009백만원
- . 회천도시계획도로 개설비 800백만원
- . 가업-연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500백만원
- . 교현-우이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500백만원
- . 농촌지도소 건립비 550백만원
- . 우고천 개수 공사비 480백만원
- . 쓰레기 처리 관련 투자비 443백만원
- .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금 348백만원
- .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비 360백만원
- . 청결미 제조공장 지원금 200백만원
- .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00백만원
- . 덕계 어린이집 건립비 238백만원
-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200백만원
- . 광적면 청사부지 매입비 246백만원

· 은현면 청사 증축비

161백만원등

3. 검토보고

전문위원 홍 영 섭

-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493억1,600만원보다 17.7%인 87억1,100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규모는 580억2,700만원 중 일반회계가 78억8,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9.3%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억2,300만원으로 9.8% 증액되어 편성 되었음
- 금번 추경은 신경제 건설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해 공무원 봉급인상분 3% 반납등 인건비 5억200만원 판.정보비 3분의1 절감액 약 7,500만원 각종 행정사무비 즉, 관서당경비 절감액 6,500만원과 사회단체 보조물품 구입비 1억1,400만원 출장여비 1억600만원 등 총 21억8,200만원을 삭감하여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우선적으로 충당하여 공무원 스스로 앞장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사료됨.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주요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4억6,300만원 세입수입 35억2,5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이 34억으로 세입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0%로 의존수입의 비중이 크고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임을 알 수 있기에 관계 부서에서는 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겠다고 판단됨
- 다음은 주요 세출 내역을 보면 기정예산 절감이 21억8,2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 사업은 105건에 46억5,500만원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현 - 우이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5억원, 상수도 특별회계외 3개에 7억9,0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10억900만원,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8억원, 가업-연곡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농촌지도소 건립비 5억5,000만원, 우고천 개수공사비 4억8,000만원, 쓰레기처리 관련 투자비 4억4,3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금 3억4,800만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비 3억6,000만원, 청결미 제조공장 지원금 2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억원, 덕계어린이집 건립비 2억3,800만원, 광적면 청사부지 매입비 2억4,600만원, 은현면 청사 건축비 1억6,1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억원, 위탁영농회사 지원 4,500만 원 등이며, 또한 주민의 여론 및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15억 1,500만원을 투자하고 사업 계획의 변경 사업비의 부족 등으로 사업의 완료가 안 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과 지역개발 및 농촌 구조 개선사업 환경정화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 됨.

-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1993년도 제1회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의 총액은 8억 2,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84억3,100만원 보다 9.8%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입 내역을 보면 사업외 수입이 7억6,200만원 보조금 1억9,200만원으로 이를 회계 별로 구분하여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군비 전입금이 3억3,800 만원을 재원으로 회천상수도 지선풍장 공사비 및 광.백석 상수도 배수로 사업비에 계상하였고, 광.백석 상수도 사업 공사지연 및 수도수용가 호용비미로 1억2,300만원 세입 결합 차질로 사료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4억6,300만원 중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200만원이 감액된 4억5,100만원으로 조정 되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당초 4억1,600만원보다 군비전입금 등 1억9,400만원이 증액되어 날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덕정 공용주차장 설치에 5억9,500만원을 투자하는 내용이며,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주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5,600만원, 새마을소득 금고운영 특별회계 1억4,9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2,000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12억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6억

9,4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군비전입금 5,300만원, 도비보조금 2,700만원, 총 1억400만원을 가지고 농촌 도로 구조물 설치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에 투자되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발전 및 보조사업 계획의 변경 추가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이며, 특히 영조물 관련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노력한 흔적이 있으며,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예산을 할애 했기에 대부분 잘 편성 되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 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표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 전원 찬성)

7. 기타

없 음

【 16 】 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3. 7. 30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양주군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